

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황유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07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황유정, 강석주, 고광민,
곽향기, 구미경, 김경훈,
김규남, 김영철, 김용일,
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
김재진, 김태수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박상혁,
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
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
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
유정인, 윤기섭, 윤종복,
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
이소라, 이영실, 이종배,
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
임춘대, 정준호, 최민규,
최진혁, 허 훈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46명)

1. 제안이유

-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일하는 방식 변경과 함께 새로운 직업의 창출이 이어지고 있음.
- 디지털 기술의 습득은 재직 여성의 직무역량강화를 통한 고용유지전략은 물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필수요건이 되면서 여성의 디지털 기술 습득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직무역량교육이 요구됨.
- 이에 따라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디지털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디지털 직무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6조제1항제8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경제활동촉진사업)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8. (생략)</p>	<p>제6조(경제활동촉진사업) ① 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.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</u></p> <p><u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u></p>